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일, 김성기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9월 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성기 의원
- 제안일자 : 2024. 9. 2.
- 회부일자 : 2024. 9. 5.
- 상정일자 : 2024. 9. 5.

2. 제안이유

- 평창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야간관광을 통해 약 5,30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됨¹⁾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및 관광지·관광시설 등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우리 군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야간관광’ ‘야간관광 사업’ 등의 핵심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서는 우리 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함.

1)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안 제6조(지원 등) 및 제7조(위탁)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관광패러다임을 대표하며 잠재력을 갖춘 야간관광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적정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됨.

□ **야간관광 특화도시 개요**

- (정 의) 야간시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콘텐츠로 관광소비를 창출하고 식음·숙박·교통·안내·쇼핑·정책 등 야간 관광여건을 갖춘 도시
- (구성요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① 야간 콘텐츠, ② 야간 경관 명소, ③ 야간 관광여건으로 구성

① **야간 콘텐츠**

(비상설) 특정기간동안 평균 방문객 수 이상의 야간집객이 가능한 축제/이벤트/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상 설)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야간 체험·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되는 콘텐츠

② **야간 경관명소** : 야간관광 특화도시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형물, 조망 시설물 또는 조성지역

③ **야간 관광여건** :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식음/숙박/교통/안내/안전/쇼핑/정책 등의 관광 기반시설 및 환경

□ **세부 사업유형**

- ① ~ ②는 연계·재구성을 통한 시너지 제고, ③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으로 구성

구 분	정의	사업 예시
① 야간 콘텐츠	(비상설) 특정기간동안 평균 방문객 수 이상의 야간집객이 가능한 축제/이벤트/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축제 ▪ 특정기간 한시적 운영 야간 스페셜 이벤트 및 공연 등
	(상설)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는 야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상시 운영되는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문화체험·액티비티 ▪ 야간 투어 프로그램(시티투어 등) ▪ 야간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 주간 프로그램 야간운영 확대 등
② 야간 경관명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야간경관 조형물, 조망 시설물 또는 조성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경관·명소·랜드마크 ▪ 야간 자연·환경 체험 프로그램
③ 야간 관광여건	야간 콘텐츠 및 경관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식음/숙박/교통/안내/안전/쇼핑/정책 등 관광 기반시설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식음·쇼핑 서비스 운영 ▪ 야간 이동수단 지원 ▪ 치안·안전 및 여행안내소 운영 ▪ 야간관광 관련 조례 제정 등

□ 세부 사업 예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10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2일

발 의 자: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이은미,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평창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야간관광 진흥 및 활성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라.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9.(10일간),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8. 6. ~ 2024. 8. 16.(11일간), 의견 없음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과.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관광진흥법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야간관광 지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나. 관련조문 : 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야간관광 지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인건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 소요 예산 항목별 적용

나. 추계 결과

구 분	내 역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2,400,000	
인건비 및 보험금	인건비(101-04) : 전담조직 인건비 및 운영비	40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야간관광콘텐츠 개발(공연 및 축제) 및 육성	1,120,000	
홍보 행사비	행사운영비(201-03) : 프로모션 개최 및 팸투어	520,0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봉평 야외도서관, 야간 도보길 조성 시설비	36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590,000	458,000	484,000	434,000	434,000	2,400,000
	인건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일반운영비	100,000	298,000	274,000	224,000	224,000	1,120,000
	행사운영비	50,000	80,000	130,000	130,000	130,000	520,000
	시설비	360,000					360,000
재원 조달		590,000	458,000	484,000	434,000	434,000	2,4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90,000	158,000	184,000	134,000	134,000	1,200,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590,000	158,000	184,000	134,000	134,000	1,200,000
지방채							
기 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